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의 “다만,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”를 삭제한다.

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30억원 이상인 사업”을 “시·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50억원 이상인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”을 “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)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사전심의회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회한다.	제19조(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시·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회한다.
1. 중앙대책본부장: 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30억원 이상인 사업	1.----- : <u>시·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50억원 이상인 사업</u>
2. 시·도대책본부장: 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	2.----- : <u>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(용지보상비 제외)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</u>
②~④ (생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